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2507호

제출년월일 : ２０２０년 9월 28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21년 1월 개관 예정인 건강힐링문화관 내 “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”를 체육시설에 신설하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립 체육시설에 “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”를 신설하고, 사용료 및 수강료는 “체육센터”의 기준에 따르고자 함.(안 별표 1 및 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8조

-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붙임 “비용추계서” 참조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0. 9. 1. ~ 2020. 9.21.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목동문화체육센터란 다음에 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건강힐링 문화체육센터	- 배구, 농구, 배드민턴 등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- 체육·문화분야 강습프로그램 운영	양천구 신월동 595-21

별표 2의 공통사항 제1호 중 “목동문화체육센터”를 “목동문화체육센터, 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”로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

〔별표 1〕

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

(제3조 관련)

시 설 명	기 능	위 치
목동테니스장	- 테니스 - 테니스 관련 강습프로그램 운영	양천구 목동 915
해누리 체육공원	축구, 풋살, 테니스, 족구, 게이트볼 등	양천구 신정동 330-4
양천구민 체육센터	- 수영, 탁구, 헬스, 에어로빅 등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- 체육·문화분야 강습프로그램 운영	양천구 목동동로 87 (신정동 322-10)
신월문화 체육센터	- 수영, 헬스, 에어로빅 등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- 체육·문화분야 강습프로그램 운영	양천구 지양로 47 (신월동 987)
목동문화 체육센터	- 수영, 헬스, 에어로빅, 골프 등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- 체육·문화분야 강습프로그램 운영	양천구 목동중앙본로 73 (목동 946-1)
〈신 설〉		
계남다목적체육관	- 배드민턴, 배구, 농구 등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- 체육분야 강습프로그램	양천구 신정로 273-5 (신정동 695-6)
연의체육 공원	- 트랙, 농구장1면, 배드민턴장 2면 - 체육단련기구 등	양천구 신정동 1319-2
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	- 실내 배드민턴장 4면	양천구 목동 202-16

개 정 안

〔별표 1〕

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

(제3조 관련)

시 설 명	기 능	위 치
목동테니스장	- 테니스 - 테니스 관련 강습프로그램 운영	양천구 목동 915
해누리 체육공원	축구, 풋살, 테니스, 족구, 게이트볼 등	양천구 신정동 330-4
양천구민 체육센터	- 수영, 탁구, 헬스, 에어로빅 등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- 체육·문화분야 강습프로그램 운영	양천구 목동동로 87 (신정동 322-10)
신월문화 체육센터	- 수영, 헬스, 에어로빅 등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- 체육·문화분야 강습프로그램 운영	양천구 지양로 47 (신월동 987)
목동문화 체육센터	- 수영, 헬스, 에어로빅, 골프 등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- 체육·문화분야 강습프로그램 운영	양천구 목동중앙본로 73 (목동 946-1)
건강힐링 문화체육 센터	**- 배구, 농구, 배드민턴 등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- 체육·문화분야 강습프로그램 운영**	**양천구 신월동 595-21**
계남다목적체육관	- 배드민턴, 배구, 농구 등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- 체육분야 강습프로그램	양천구 신정로 273-5 (신정동 695-6)
연의체육 공원	- 트랙, 농구장1면, 배드민턴장 2면 - 체육단련기구 등	양천구 신정동 1319-2
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	- 실내 배드민턴장 4면	양천구 목동 202-16

현 행	개 정 안
〔별표 2〕 **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** (제6조 및 제7조 관련) ☐ 연습사용료 (생 략) ☐ 전용사용료 (생 략) ☐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(생 략) ☐ 부속시설 사용료 (생 략) 【공 통 사 항】 1. "체육센터"는 별표 1의 양천구민체육센터, 신월문화체육센터, 목동문화체육센터를 말한다. 2. ~ 5. (생 략)	〔별표 2〕 **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** (제6조 및 제7조 관련) ☐ 연습사용료 (현행과 같음) ☐ 전용사용료 (현행과 같음) ☐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(현행과 같음) ☐ 부속시설 사용료 (현행과 같음) 【공 통 사 항】 1. "체육센터"는 별표 1의 양천구민체육센터, 신월문화체육센터, **목동문화체육센터, 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**를 말한다. 2. ~ 5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의 발생요인

○ 2021년 1월 개관 예정인 건강힐링문화관 내 “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” 운영을 위한 비용 반영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.

○ 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세입·세출 연 5% 증가 반영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연도별 세입·세출 **증가율 5%를 반영**하여 비용추계 한 결과 세출 추계액은 향후 5년간 총 2,533,608천원 소요 예상되며, 세입 추계액은 향후 5년간 1,711,332천원으로 예상됨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**2021년**	2022년	2022년	2023년	2024년	**합계**
세출	건강힐링 문화체육센터 운영	**468,348**	479,165	503,123	528,279	554,693	**2,533,608**
세입	건강힐링 문화체육센터 운영	**309,708**	325,193	341,453	358,526	376,452	**1,711,332**

4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가. 세출 내역(2021년 기준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근거
계	**468,348**	
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	77,680	사무관리비 : 29,200천원, 공공운영비 : 48,480천원
일반보전금	179,952	문화프로그램 강사료 : 90,000천원, 체육프로그램 강사료 : 89,952천원
연구개발비	12,000	홈페이지구축 : 12,000천원
시설비 및 부대비	20,000	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비 : 20,000천원
자산취득비 등	6,600	자산취득비 : 5,600천원, 업무추진비 : 1,000천원
인력운영비	172,116	임기제(다급1, 마급3) 인력운영비 : 172,116천원

나. 세입 내역(2021년 기준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근거
계	**309,708**	
문화프로그램 운영수입	129,800	명상교실 등 20여개 교실 프로그램 운영 수입
체육프로그램 운영수입	179,908	농구교실 등 16개 종목 프로그램 운영 수입

5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 / 구분	**2021년**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**합 계**
구 비	**468,348**	479,165	503,123	528,279	554,693	**2,533,608**

6. 작성자

부서명	**직위**	**성 명**	**연락처**
문화체육과	**과장**	**신수길**	**2620-3400**

【관 계 법 령】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.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**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**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.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5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**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,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**시킬 수 있다.